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(2000. 7. 1) 및 동법시행령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
-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문제 여건변화 등 도시성장 관리의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“대지”소유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및 시설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정함.
-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컴퓨터 통신(홈페이지)을 활용하는 등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

-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
-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세부시행규정(훈령)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함.
-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일간신문 및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청취
-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구미시 건축조례의 규정 흡수(건폐율, 용적을 등)
- 개발행위허가기준 입목 본수도60퍼센트, 경사도30퍼센트, 표고100미터미만
-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을 폐지하고 구미시건축조례 규정을 흡수 구미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운영코자함.

라. 참고사항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개발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화 시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(2000. 1. 28. 법률 제6243호)에 따른 관계규정과 건교부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한 전문78조의 이 제정 조례안은
- 건축법으로 관리하던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통합하여 도시 체계를 흡수함으로써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 하였고, 건축조례로 규정된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,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구의 지정관리 체계를 도시계획 조례로 일원화한 비교적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합리적인 조례라 사료됨.
- 다만 제정조례안중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, 타 조례에 상충되는 일부 조항과, 조문 체계상 부적합한 문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문은 삽입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타당하겠음.

· 조문적용이 잘못되어 수정이 바람직한 조항

- 제43조2항의 영63조제3항을 → 영62조제3항으로
- 제46조 중 건폐율은 제42조에서를 → 건폐율은 제43조에서로

· 조문 또는 문항 수정이 바람직한 조항

- 제64조(구성)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~20인으로 구성한다를

→ 제64조(구성)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이상 20인내로 하되,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

※ 수정사유 : 시행령 제83조3항 규정에 따라 공무원·시의원외의 위촉위원 구성비율 3/2이상으로 하도록 함.

- 부칙 제4조(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) 영 부칙 제7조 1항,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———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적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율의 범위 이내로 하며, 건폐율은 6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를

→ 부칙 제4조(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) 영 부칙 제7조 1항,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———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,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[별표17]을 적용하며, 건폐율은 6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로

※ 수정사유 : 시행령 부칙제7조1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도록 규정됨.

· 조문 또는 문항의 삭제가 바람직한 조항

- 제40조(토석채취자의 행위제한) 토석의 채취허가로 인하여 조성된 부지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
→ 전문 삭제

※ 삭제사유 :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고, 주민의 권리제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됨.

- 제42조(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7호 종전의 일반주거 지역 : 별표17

→ 전문 삭제

※삭제사유 : 상위법령에 규정사항이 없고, 부칙 제4조에서 규정 하고있음.

- 제44조(지역 안에서의 용적율) 제1항제17호 말미, (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80)

→ 전문 삭제

※삭제사유 : 상위법령에 규정사항이 없고, 구미시건축조례제 제116조 제1호와 상충됨. 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의결